

멕시코 세법개정관련 2010년 적용세율 변경내용

□ 세법개정배경

- 정부재정의 3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수출수입이 최근 유가 하락 세입이 줄어들는데다 원유생산량 감소 지속으로 인한 향후 세원 부족이 예상되자 멕시코 정부는 비 석유부문 세입 확대를 통한 세원 마련조치를 취하게 됨.
-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, 부가가치세, 특별소비세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시행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의회에 상정했으며, 연방의회는 11월 초 일부 수정을 거쳐 승인하였음.

□ 주요개정내용

- 세법개정은 세입 확대가 목적이었으므로, 주로 세율 인상에 맞춰져 있는데, 부가가치세(15%⇒16%), 법인소득세(28%⇒30%), 특소세(전화세 신설), 현금예금보유세(2%⇒3%) 등 거의 모든 세금의 세율이 인상됨.

<참고> 멕시코 세법개정에 따른 2010년도 시행 주요세금 세율 변경내용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	비 고	
부가가치세(IVA)	15%	16%	국경지역 10%⇒11%	
법인세소득세(ISR)	28%	30%	3년간 한시 적용	
단일세율법인세(IETU)	17%	17.5%	'08년부터 시행(2010년까지 매년 0.5% 인상)	
특별소비세(IEPS)	전화세 (신설)	3%	농촌, 공중전화, 인터넷 제외	
	담배	0.8페소/갑	1.1페소/갑	매년 0.3페소씩 인상, 2013년 이후 2페소 부과
	맥주	25%	26.5%	2010년부터 3년간 한시적 26.5% 적용
현금예금보유세(IDE)	2%	3%		
	25,000페소*	15,000페소	과세기준액=*월 현금입금누적액기준 이상 초과액에 대해 부과	
지주회사 법인세 소급부과	-	-	'00년~'04년까지 지주회사용 납입법인세와 일반법인세 차액 소급 부과('10년 : 소급액 60% 납부, '11년~'14년 : 매년 10% 납부)	

- 한편,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용 법인세제도를 이용해 세금 탈루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,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납부한 동 법인세와 일반법인세로 계산했을 경우와의 차액을 소급 납부토록 규정함.
-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 세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, 물가인상 압력, 서민 경제 위축 심화와 함께 법인세 등 기업관련 세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 약화와 외국인 투자 유인 감소가 우려됨.

<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>